#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개정대비표

| 개 정 전 | 개 정 후 | 비 고 |
|---|---|---|
| < 신 설> | 제 3 조 거래중지계좌<br>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은행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br>① 예금잔액이 10,000 원 미만이며, 1 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br>② 예금잔액이 10,000 원 이상 50,000 원 미만이며, 2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<br>③ 예금잔액이 50,000 원 이상 100,000 원 미만이며, 3 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| 금감원장의 권고에 따른 약관변경 |